

- 구미도시계획재정비결정(변경)안불합리에 따른
청원(거의1동) -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구미시 거의동 164번지 석창균 외 118인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박 배 원

3. 청원사유(내용)

- 거의1동은 도·농 통합이 되기 전 199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예정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·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는 주거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음.
- 마을의 지리적 여건은 거의2동 금오공대와 제4공단 및 제2공단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으며, 이미 주위가 모두 학교, 공단 등으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나 거의1동만 자연녹지로 남아 있음.
- 오래 전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주위에 대규모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있어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므로, 주거지역으로 지정 요망.

4. 검토의견

- 주민들의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역의 제반 여건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거주환경의 개선이 가능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재정비(안)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